

정답 및 해설

• 30~33 사회 •

정답

1	⑤	2	③	3	③	4	⑤	5	②
6	④	7	①	8	④	9	②	10	③

해설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6문단에 따르면, 무효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다. 따라서 무효행위가 기한에 상관없이 계속 무효인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해서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까지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취소가 법률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지만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법률행위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④ 6문단에 따르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법률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이행된 경우 수령자는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로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2, 3문단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무효(㉠)는 당시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지만, 법률행위의 취소(㉡)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모두 충족하여 유효했던 경우이므로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부재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는 성립하였지만 효력요건이 불충분하여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 ② 2, 3문단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지만 취소 사유가 있고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했을 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되어 결국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일단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효력이 없어지게 하려면 취소권이 소멸되기 전에 취소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무효는 효력요건이 불충분하여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3문단에서 법률행위의 취소는 법률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한 유효의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후 어떤 사유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된 경우이다.
- ⑤ 3문단에 따르면,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해당 법률행위가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해야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래부터 그 효력이 없는 경우로 무효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됨을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4문단에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더라면 그 법률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기>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이루어진 사례임을 알 수 있다. ㉠는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유가 되어 무효임이 밝혀진 법률행위이고, ㉡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다른 형태로 남겼을 것이라 인정되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효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행위인 ㉠를 다른 법률행위인 ㉡로 전환하여 효력을 인정받게 된 사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는 기존의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다른 법률인 ㉡로 전환한다고 해도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시 발생시킨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다.
- ④ ㉠가 ㉡로 바뀐 것은 맞으나 이는 추인이 아닌 전환의 사례이며, 유언을 남기고 떠난 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의 사례는 무료행위의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4문단에 따르면,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소급하여서, 즉 처음으로 되돌려 '유효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행위를 추인하여 갖추지 못했던 효력요건을 추후에 보충한다고 해도, 그 무효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⑥의 '효력'은 '법률이나 규칙 따위의 작용'의 의미이다. '효험을 나타내는 능력'은 '효능'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성립)은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짐'의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③ ㉓(소급)은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의 의미이다.
- ④ ㉒(부인)은 '어떤 내용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의 의미이다.
- ⑤ ㉑(반환)은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 줌'의 의미이다.

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2~3문단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모두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라는 공통점을 가지나 효력요건에서 차이를 보인다. 법률행위가 유효성을 가지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법률행위의 취소는 효력요건을 충족하여 무효화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행위의 무효는 효력요건을 가지지 않아 성립요건만으로 유효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취소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5문단에 따르면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갖추지 못한 효력요건을 추후에 보충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이 가능하려면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

률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이를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6문단에 따르면 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 그르다는 판단은 적절하다.

7. [출제의도] 다른 방법과의 비교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a. 4문단에 따르면 무료행위의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c. 5문단에 따르면 무료행위의 추인은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무효 원인이 소멸된 상태이고 당사자가 기존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b. 4문단에 따르면 무효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하거나 추인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지위를 갖는 것이기 기존의 무효인 법률행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 d. 5문단에 따르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효력요건을 추후에 보충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맞으나, 이전에 유효한 법률행위라는 점은 3문단의 법률행위의 취소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4문단에 따르면 무료행위의 전환이 가능하려면 첫째,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하며 둘째, 당사자가 해당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㉒의 징계해고조치가 징계휴직조치로 전환이 된 사례의 이유를 판단하면 당사자가 징계해고조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징계휴직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적절하다.

9.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2문단에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게 되고 기간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5문단에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어 법률효과가 사라지면 해당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보기>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A씨의 무효 주장이 없더라도 무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

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에 따라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어 법률효과가 사라지면 해당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있고 A씨는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② 5문단에서 만약 이무 의무가 이행된 경우라면 수령자는 해당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5문단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안에 A씨가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 ⑤ 5문단에서 무효가 된 법률행위에 따라 이미 이행된 법적 의무에 관해서 수령자는 반환의무를 이행자는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보기>의 민법 제 139조에 따르면 추인이 가능한 조건은 첫째,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둘째, 추후에 취소가 가능한 행위에 대해 그 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문단의 무효 주장과는 달리 인지의 측면에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안다는 점은 추인의 첫 번째 조건이며 추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기 행위에 대해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법률행위로 2문단의 법률행위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5문단과 <보기>의 민법 조항에 따르면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기존의 법률행위로서가 아닌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지위를 가진다.
- ④ 만취한 상태에서의 계약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해당하고 이는 2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성립요건은 충족하였지만 효력요건이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된다.
- ⑤ <보기>의 민법 조항에서 추인이 가능하려면 당사자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함을 알 수 있고, A씨가 다음날 계약 의사를 밝힌 것은 이에 해당한다.